

더케이손해보험 국내여행자보험

◆상품소개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

- 소풍, 수학여행, 견학, 주말여행, 야유회, 지방출장 등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합니다.
- 여행을 위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휴대품 도난, 파손, 타인에게 끼친 손해까지 보상

- 휴대품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까지 보상합니다.(특약가입시) 단, 공제금액 1만원(비례보상)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비례 보상 됩니다.

자유로운 여행기간 선택

- 고객님의 여행기간(1개월 이내)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설계하세요. The-K 손해보험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보장해드립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주 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특약입니다. 해당특약 가입시에만 보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 사망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 3~100%지급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	--	---------------------------------	--

▷기타특약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배상책임		보험기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 (단, 자기 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 도난, 파손)	가입 금액 한도 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지급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 보험금 2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상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계액
	상해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병원/종합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전문요양 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상해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 1 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질병의료비	질병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계액

	질병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병원/종합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전문요양 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질병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 1 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례보상) 실손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2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 되지 않고 비례보상 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종료 시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180 일까지 보상됩니다.

· 2015.09.01 이후 개시되는 실손의료비담보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급여 10%, 비급여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랜

▷ 플랜별 가입금액 - 15 세미만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본형	고급형
기본계약	상해사망	-	-
	상해후유장해	100,000,000	100,000,000
기타특약	배상책임	5,000,000	10,000,000
	휴대품손해	500,000	1,000,000
	상해입원	1,000,000	1,000,000
	상해통원	100,000	100,000

	상해 처방조제	50,000	50,000
	질병입원	-	1,000,000
	질병통원	-	100,000
	질병처방조제	-	50,000

▷ 플랜별 가입금액 - 16 세 ~ 69 세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본형	고급형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000,000	100,000,000
	상해후유장해	100,000,000	100,000,000
기타특약	배상책임	5,000,000	10,000,000
	휴대품손해	500,000	1,000,000
	상해입원	1,000,000	1,000,000
	상해통원	100,000	100,000
	상해 처방조제	50,000	50,000
	질병입원	-	1,000,000
	질병통원	-	100,000
	질병처방조제	-	50,000

구분	30 세 기준	40 세 기준	50 세 기준
남자	920	950	1,040
여자	520	660	870

구분	30 세 기준	40 세 기준	50 세 기준
남자	3,180	4,220	6,080
여자	3,120	4,680	7,870

-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는 1 사고당 자기부담금 각 1 만원이며, 휴대품손해는 각 물품에 한해 20 만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 상법 제 732 조에 따라, 보험나이만 15 세미만의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및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 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입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에만 보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 **해지환급금 산출방법 예시: (개별보험료/총보험기간)*미경과일수**
- (비례보상) 실손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2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 2015.09.01 이후 개시되는 실손의료비담보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급여 10%, 비급여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유]**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장기손해, 다수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 3 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손해,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계약자의 고의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계약자의 고의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미경과 보험료)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해지 환급금이 원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www.educar.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시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승환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

▷ 기본형 - 3 박 4 일 기준

구분	보장명	보험가입금액	남성			여성		
			30 세	40 세	50 세	30 세	40 세	50 세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000,000	196	196	196	196	196	196
	상해후유장해	100,000,000	65	65	65	65	65	65
기타특약	배상책임	5,000,000	9	9	9	9	9	9
	휴대폰손해	500,000	31	31	31	31	31	31
	상해입원의료	1,000,000	423	475	536	134	233	374
	상해통원의료	100,000	198	172	188	86	123	192
	상해처방조제	50,000	5	7	17	1	3	9
합계 보험료			920	950	1,040	520	660	870

▷ 고급형 - 3 박 4 일 기준

구분	보장명	보험가입금액	남성			여성		
			30 세	40 세	50 세	30 세	40 세	50 세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000,000	196	196	196	196	196	196
	상해후유장해	100,000,000	65	65	65	65	65	65
기타특약	배상책임	10,000,000	10	10	10	10	10	10
	휴대폰손해	1,000,000	63	63	63	63	63	63
	상해입원의료	1,000,000	423	475	536	134	233	374
	상해통원의료	100,000	198	172	188	86	123	192
	상해처방조제	50,000	5	7	17	1	3	9
	질병입원의료	1,000,000	1,166	1,948	2,030	1,215	2,030	3,576

	질병통원의료	100,000	998	1,172	1,684	1,292	1,875	3,142
	질병처방조제	50,000	60	116	286	63	86	252
합계 보험료			3,180	4,220	6,080	3,120	4,680	7,870